2025년 반려동물 연관산업 수출바우처 참가기업 모집공고

2025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에 참여할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의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 (목적)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중소기업에 수출에 필요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 육성
- □ (모집대상)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국내 소재 기업
- □ (모집규모) 35개사 내외
 - ※ 추전 규모이며, 최종 선정결과는 중기부, 중진공의 평가, 예산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2. 지원내용

- □ (지원대상 및 조건) 수출 규모별·역량별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고, 지원한도 內 직전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보조율 차등 적용
 - 참여기업 바우처 사용기간: <u>'25.3.1~'26.2.28</u> (3.1일 이후 사용분부터 소급정산)

【 세부 지원대상 및 한도 】

(다위 · 밴마워)

			(리기 : 취리면)
지원트랙	지원 대상	지원한도	국고보조율
내수기업	수출액 '1,000불 미만'	30	
 수출초보	수출액 '1,000불~10만불 미만'	30	(매출액 기준)
 수출유망	수출액 '10~100만불 미만'	45	~100억원 : 70% 100~300억원 : 60%
 수출성장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	70	300억원~ : 50%
수출강소	수출액 '500만불 이상'	100	. 3070

- □ (지원내용)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해외 진출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式(수출바우처)으로 지원
 - * 디자인개발, 홍보/광고, 전시회/행사, 컨설팅 등 14개 분야 / 참고 1 서비스 메뉴판 참조
 - "수출준비→해외진출"까지 수출 全 과정에서 해외 진출에 필요한
 "마케팅서비스 통합 메뉴판" 마련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u>마감이 1~2일 이전에</u>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②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완료건**만 인정 시간 엄수 必

3. 신청방법 및 절차

- □ (신청기간) 2025년 2월 20일(금) ~ 3월 7일(금) 17:00까지
- □ (신청방법)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이 아님에 주의
 - ㅇ 주무부처/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절차 및 향후일정) 신청서 접수(~3.7, aT) → 우수기업 추천(~3.17 농식품부)
 - → 결격사유 등 평가(~3월말, 중기부·중진공) → 최종 선정통보(중기부·농식품부, 4월중)
 - → 선정결과 기업안내(4월중)

□ 신청서류

구분	연번	서식명	내용		
	1	참가신청서			
	2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3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기업 및 프로젝트 상세정보 작성		
	4	사업자등록증명원	10014 E17411 71010		
필수	(5)	`21~`2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23년 미결산 기업은 '20~'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7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 (유효기간 확인必)		
	8	관세청 수출통관실적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증명서(택일)		
	9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수출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10	간접수출실적 증명서	KTNET 발급본		
선택 (희망시)	11)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수출계약서 사본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12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	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증명서 없을 시 제출		

□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①~③) 참가신청서,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사업계획서는 서식 1~3 서류 작성 및 날인 후 스캔본(또는 PDF파일) 제출
- (④~⑥) 사업자등록증명원 '21~'2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남 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 정부 24 사이트 등에서 다운받아 스캔본(또는 PDF파일) 제출
- OnePass를 통한 제출 가능하나, <u>반드시 현행화하여 제출</u> 필요
- (⑦)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
- (⑧) 수출실적증명원: 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중 선택해서 스캔본 첨부(내수기업도 제출 必)
- 신청서에 기입한 **담당자 연락처(E-mail, 휴대폰번호)를 통해 일정, 결과발표 등의 안내**가 제공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 필요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서류의 제출 거부, 고의 누락 시 선정 제외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는 비공개 조건으로 관련 기관에 공개 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등의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가능

4. 문의처

□ (접수)	한국농수산식	품유통공사	신사업	TF(061-931-	-0891,	atpet@at.or.k	T)

□ (평가・운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바우처 콜센터(055-752-8580)

참고 1

수출바우처 서비스 메뉴판

□ 서비스 메뉴판: 14개 서비스 분야

서비스 분야	주요 서비스 내용			
디자인개발	외국어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홍보/광고*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			
<mark>전시회</mark> */행사/해외 영업지원	해외전시회,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 제품시연회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			
특허/지재권/시험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지재권 분쟁지원 등			
해외규격인증 [*]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			
국제 <mark>운송</mark> *	국제운송료 등 해외운송 지원 서비스(국내 및 도착국 비용 제외)			
홍보동영상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통번역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			
조사/일반 컨설팅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 제품 동향조사, 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조사 등			
역량강화 교육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등 수출 역량 강화 교육 분야 전반			
브랜드개발/관리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 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			
서류대행/현지등록	계약서 작성,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분야 전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회계감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 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			
무역보험·보증*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등 수출과정에서 필요한 무역보험보증비용 지원			

^{*} 사후정산 가능 분야

참고 2

유의사항 (참여기업 안내 필수)

□ 제출 서류

구분	연번	서식명	내용
	1	참가신청서	
	2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3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기업 및 프로젝트 상세정보 작성
	4	사업자등록증명원	/2214 미건사 기업이
필수	(5)	`21~`2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23년 미결산 기업은 '20~'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20~ 22년 표단제 [제표 8 8년 제달
	7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 (유효기간 확인必)
	8	관세청 수출통관실적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증명서(택일)
	9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수출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10	간접수출실적 증명서	KTNET 발급본
선택 (희망시)	11)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수출계약서 사본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12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	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증명서 없을 시 제출

- (수출실적 인정기준) 관세청 수출 통관실적은 제출 필수이며, 그 외 수출실적은 증빙서류 제출시에만 합산
- ※ 법인등기부등본 상 지점·지사로 등록된 경우, 지점의 수출실적 증명서 제출 시 실적 합산 가능(동일 법인이 아닌 자회사, 계열사는 제외)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 관세청 수출 통관실적(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 증명서 중 택일)
- 그 외 수출실적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 (한국무역협회)
 - 간접수출실적증명서 (KTnet)
 - 서비스수출실적 (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및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수출계약서 및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 * 외화입금증명서에는 신청인 정보, 송금인 정보, 일자, 금액이 포함되어야 함
- ** 서비스수출 및 외국인도수출 실적은 '24년 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 KTNET 발급본은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서'만 인정(구매확인서만 제출 시 인정불가)하며, KTNET 증명서에 서비스 수출실적·외국인도수출 실적이 포함된 경우 중복 제출 불요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사전 가입

- 최종 선정 이후 협약체결 등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필수이며,
- 공인인증서 발급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 안내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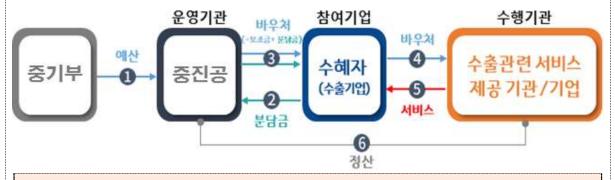
- * 사업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 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법인 범용인증서 발급 약 11만원, 용도제한인증서 발급 약 1만1천원 비용 발생)
- * 인증서 발급시 범용인증서는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는 최소 3일이 소요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단, 직접 방문 시에는 당일 발급 가능,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참조)

□ 보조율 및 기업 분담금

- 동 사업은 **'23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u>국고지원 보조율이 차등</u>*되며,** 협약시 **기업분담금이 발생함을 반드시 사전에 안내**
- * 국고지원보조율 차등 : 직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미만 : 70% / 매출액 100억~300억원 미만 : 60% 매출액 300억원 이상 : 50%
- ** 단, '23년도 결산 미완료기업은 '22년도 재무제표 적용

< 수출바우처 개요 >

- **(사업목적)** 전시회, 디자인개발 등 14개 분야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 육성
- (선정대상) 내수·수출중소기업
- **(지원내용)** 국비와 자부담금을 재원으로 수출기업에 바우처를 발급하고, 바우처를 보유한 기업은 온라인 메뉴판에서 서비스를 선택



운영기관이 매칭으로 조성한 사업비(①국고+②자비부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③바우처(가상의 쿠폰)를 발급하고, 바우처를 보유한 수혜기업은 수행기관이제공하는 각종 수출지원 서비스를 온라인 메뉴판 한 곳에서 비교 선택하여 ②수행계약을 체결하고 ⑤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⑥소요비용 정산

【서식1-참가신청서】

중기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신청서

		기업명]				대표자					
	대	표자 휴대					대표자 이메	일				
		설립일기	~ 자				법인등록번호	<u>5</u>				
		업종		제조업 /	비제조업		생산 품목					
	(본사)전화번호		,			(본사)팩스번	호					
	(공장)전화번호					지역						
구분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본 점										
		공 장										
](1) (해오	<u> </u>									
기업](2) (해외	· · · · · · · · · · · · · · · · · · ·									
현황		담당자/직					연락처					
		휴대전화	화				이메일					
				'22년			'23년		'2 4	1년(예	,	
	최근	매줄액((백만원) - 기기		백만원			백만원			백만	
	3개	수출액	직접 간접		달러 달러			달러 달러			달 달	
	년도	(달러)	합계		달러			달러			<u></u> 달	
		종업원	년수(명)		명			명			,	명
		수출업	격	년	사업참여여	기력	신규(),	재신청()회 (침	삼 여년 5	로:)	
	주요			없음	있음			부서명			인원	
	인력	해외마케팅	J·영업 인력									
	운영	연구개	발인력									
	수출	품목 및	서비스	현재								
수출				계획								
현황		주 요수출 : (3개국 이		현재 -N 전								
및 목표				계획								
크표		무표금액(
주요 계열사 해당 시 작성												
사업 * 동 사업 참여시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 작성 개요												
	당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동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0		L'0/	1년 7개	는 ㅂ 기기,					년	월	ا و	
기업명 :				대표	이사 :		(직인))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홈텍스), 3. 최근 3년간 수출실적 증빙서류,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5.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6. 기업(신용)정보동의서, 7. 중소기업확인서 등

기업[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kotra 귀중

본인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및 글로벌강소기업 1,000+프로젝트)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기부·중진공·kotra와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_ 1. 71 11 (1. 0 / 0 - 2 - 1 1 1	464 CC 46
수집ㆍ이용 목적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를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T업·이용 국석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
	소, 전화번호) 등), 사업 신청 이전 및 이후 기업(신용거래)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
	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
수집 · 이용할 항목	│ 근영업상황),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고용에 관한 내역(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
1 1 10 2 3 1	HS코드, 수출액, 국가별 수출액, 운송방법,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간접수출에 관한
	거래내역(공급기업, 공급액, HS코드, 품목명, 문서번호, 발급일),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정보,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기업 정
보유·이용 기간	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그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ㆍ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거부할 경우 불이익	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를 위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하여 제출한 서류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보조금 상환, 참여 제한 등 제재 │ │나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여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_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게 판한 사항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조회대상 기관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회사(국민, 기업은행 등)
2440 AC	▶ 중소기업 관계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KTNET ▶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조회의 목적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신용정보 조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회사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 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등) ·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조회할 기업(신용)정보	▶중소기업 관계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KTNET, 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수행사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재무 상황(재무제표 등) 등 · 고용에 관한 내역(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HS 코드, 수출액, 국가별 수출액, 운송방법,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간접수출에 관한 거래내역(공급기업, 공급액, HS코드, 품목명, 문서번호, 발급일)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kotra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u> 3. 기업(신용)정모의 제공(</u>	에 단안 사용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제공받는 자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KTNET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KTNET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및 수행사 등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고용에 관한 내역(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수출액, 국가별수출액, HS코드, 품목명 등), 간접수출에 관한 거래내역(공급기업, 공급액, HS코드, 품목명, 문서번호, 발급일)
	·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기타 신용정보(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사업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KTNET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식별정보, 대출정보 등 자료
	▶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및 수행사 :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 고용정보 등
	▶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등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1. 00 12 0 21 200	- 40
제공·조회 대상기관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조회 목적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ㆍ조회 정보의 항목	▶식별정보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고용에 관한 내역(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수출액, 국가별 수출액, HS코드, 품목명 등), 간접수출에 관한 거래내역(공급기업, 공급액, HS코드, 품목명, 문서번호, 발급일)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kotra에 제공하여, 중기부·중진공·kotra가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며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 를 중진공 홈페이지와 통합정보시스템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해외마케팅 전담인력 채용 알선을 제공받기 위해 무역협회 일자리센터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청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당사의 정보(공장등록증, 공장설립 등 승인서) 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기부·중진공·kotra가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5. KTNET 무역정보 활용·제공 동의

제공·조회 목적	▶ 무역관련 금융·보증·보험기관 이용시 거래지원 및 편의제공 ▶ 국내외 바이어 발굴/매칭 등 거래선 확대 지원 ▶ 중소기업지원 등 공공기관의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제공 ▶ 무역사기 방지를 위한 공정 무역환경 조성 등
무역정보 활용ㆍ제공 항목	▶업체별 취급품목 or 품목별 업체정보 * 취급품목(품목분류번호, 품명), 업체정보(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업체별 직·간접 수출입 실적을 기간별로 누적한 통계 ▶기타 제공목적에 부합하는 전자무역문서 항목별 정보
제공ㆍ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KTNET 전자무역 서비스 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 무역관련 금융·보증·보험기관(ex. 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 무역진흥기관 : 무역관련 행정기관, 무역협회,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무역관련 유관기관 ▶ 국내외 바이어(품목별 업체정보에 한함) ▶ 공공/민간 연구기관, 신용평가기관 및 기타 상기 무역정보 제공목적에 부합하는 자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아래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중진공의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재된 행정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이용 사무 (이용목적)	담당자 확인 정보	동의여부 (해당란에 √표시)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사업 지원 시 기업평가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및 법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법인), 지방세납세증명(법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				(인)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 번호		연락처	()	-	

-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기부·중진공·지방청·kotra와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kotra 귀중

본인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중기부·중진공·kotra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기부·중진공·kotra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항목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_=: 120 = 1 10	4. NEO 4 7 NON EE NO				
제공받는 자	▶중기부, 중진공, kotra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지자체, 지역혁신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청렴도 조사, 관련 중진공 주관 사업 안내,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 능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와 같이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조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명: (자필성명 또는 개인인감)

담당자명: (자필성명 또는 개인인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8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수집·이용목적 ①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 수집·이용항목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쳐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일반연구·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 수집·이용기관○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수집·이용기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 파기대상 정보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 파기절차 및 방법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수출바우처사업 사업계획서

		수 <mark>출</mark> 마케팅	등 추진	계획
--	--	----------------------	------	----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 락 처			
	이 메 일		정부 지원비율			
	프로그램	추진기간	정부보조금	기업부담금	계	
1		~				
2		~				
3		~				
4		~				
5						
	신청 ()건	사업기간 : ~	천원	천원	천원	
상기 수출마케팅계획은 기업 자체판단에 의해 설계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열	일		
 추	함여기업 :		대	표자 :	(직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수출마케팅 세부 추진 계획

가. 기업현황

회사명				글로 1,00	립년월일 벌 강소기 0+프로젝 정이력(연	l업 트			
시업자등록번호				법역	인등록번.	<u>ই</u>			
주생산품									
매출액		'22년			'23년		'24년(예정)		
(천원)									
상시근로자수	'22년			'23년		'24년			
(연평균)									
ク えぬ		'22년			'23년			'24년	
수출액	직접	간접	합계	직접	간접	합계	직접	간접	합계
(단위 : 달러)									
수출국가							(· (총	개국)
수출상품(제품)									

나. 제품(상품)현황 및 수출필요성

○ 수출 제품(상품) 개요 (내수기업의 경우, 수출예정 품목 기술)

구 분	세부 내용					
생산(취급)품목*						
제품 개발현황(택일)	개발중(R&D진행)	개발완료	시제품 생산	양산단계		
용도, 특성 및 수출현황, 수출 가능성						
		omestic)	국외 (Overseas)			
제품의 국내외	- 시장규모 :		- 시장규모 :			
시장규모/시장점유율	- 시장점유율 :		- 시장점유율 :			
경쟁업체 현황**	국내 :					
०००० ५०	국외 :					

^{*} 주요 생산(취급) 품목 개요는 해외진출 대상 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 ** 경쟁업체 현황은 경쟁업체 명, 시장점유율 등 기술

\bigcirc	수출(확대) 필요	성		
	세부내용			
다.	. 목표시장 및 목	·표고객군		
	목표시장			
	희망(기)			
	진출시장			
	진출 희망국가			
	선정사유*			
	자체진행현황			
,	* 진출 희망지역	리의 시장현황(현지 시장의 니즈), 자사 제품(상품)의 경쟁력	드을	기재
) 목표고객군			
	목표고객군			
	선정사유*			

^{*} 제품 및 진출시장의 특성상 목표고객을 설정한 사유를 기재

라. 해외마케팅 준비현황

○ 수출 준비현황

수출인프라 구축도	
전담인력	
해외시장정보 획득 여부/경로	
해외마케팅 온 · 오프라인 홍보활동여부	
기수출 여부	
기타	

마. 수출마케팅 목표

○ 향후 목표

세부내용	- 단기 (1년내) - 중기 (2~3년) - 장기 (5년)
	- 8/ (Ju)

참고 2

수출바우처사업 신청 제외 대상

신청 제외 대상

- ◈ 휴·폐업했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운영중인 수출바우처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25.3.1.일 기준)
 - * (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농림부)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외식기업해외진출바우처 (해수부)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지자체) 경기도 수출기회바우처, 충북 수출창출기업 바우처 지원 사업, 광주시 기업맞춤형 수출사다리지원사업 등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과 동일한 형태의 사업
 - 단, 특정 수출서비스에 국한하여 지원하는 개별사업(지사화사업, OK FTA, 인증취득, 박람회 등)과는 중복신청 가능하나 선정 이후 각 사업간 동일 유사 항목으로 중복정산 금지
- ◈ 바우처 협약액 대비 사용률 미흡기업에 대해 참여제한 및 감점 부여
 - 대상 : 최근 2년('23년, '24년)간 산업부·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신청기업
 - * '24년 참여기업의 경우 '25년 2월 28일 기준 정산시스템상 '정산요청'단계의 바우처 금액 기준 으로 사용률 확인

구분	바우처 사용률	제재사항
	70%미만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23년도 이후 사업선정기업	70%이상 ~ 85%미만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85%이상	■ 제재 없음

- ◆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이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과 그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조 제 22호 및 23호에 따름
- ◈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는 동시 신청 및 선정 불가
-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인 경우
 - * 단, 재무제표상 제조매출이 있거나 현장평가 시 제조 활동(제품개발 및 생산, 원자재 매입 생산설비 보유, 외주생산, 자사브랜드 개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게임장비 등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 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